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유경희

계량측정제도과
공인연구관
02-609-7231

□ 제곱미터 : m²(법정계량단위/유도단위)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로서, 1변의 길이가 1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합니다. 흔히 평방미터로 부르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 아르(are), 헥타아르(hectare) : a, ha
(법정계량단위/특수단위)

$$1 a = 100 m^2$$

$$1 ha = 100 a = 10000 m^2$$

이 단위와 기호는 1879년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토지의 면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 목 또는 먹(結), 짐(負), 뭇 또는 단(束), 줌(把) : (비법정계량단위)

고조선(BC 2333년) 시대부터 사용하여 한일합방 이전까지 약 3500여년 동안 사용한 우리나라 땅의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흔히 결부속과법(結負束把法)이라고도 합니다.

한줌의 흙이라고 하는 “1줌(把)”은 고종황제가 1905년에 제정한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인 조선도량형법에서는 1 m³로 정의하였습니다.

조선도량형법의 면적 단위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줌(把)은 1 m³

1붓 또는 단(束)은 10줌(把)으로 10 m³

1짐(負)은 10붓(束)으로 100 m³ = 1 a(아르)

1목 또는 먹(結)은 100짐(負)으로 10 000 m³ = 1 ha(헥타아르)

결부속과법(結負束把法)의 단위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이 국가의 주요 생산 활동이었기 때문에 밭이나 논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발명되었던 것입니다.

고조선시대는 성인(장정)농부의 손가락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길이의 기준인 1 지(指)는 1.943 cm

길이의 표준인 10 지(指)는 19.43 cm
 땅 넓이의 기준인 한줌(把)은 가로×세로 64 지(指) = 1,546.3 m²
 한붓(束) 또는 단(束)은 10 줌(把) = 15,463 m²
 한짐(負)은 10 단(束) = 100 줌(把) = 154,63 m²
 한벽 또는 목(結)은 100 짐(負) = 15,463 m²

우리나라는 이미 고조선 때부터 단위체계를 10진법을 사용하여 땅을 측정하는 법(畝口法)을 시행한 참으로 우수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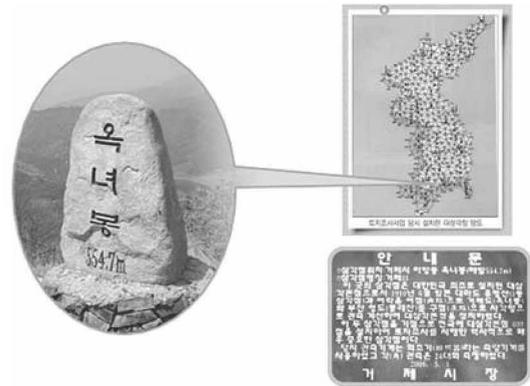
결부속과법(結負束把法)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세종대왕 12년(1430년)에 한줌(把)은 1차(尺)2, 즉 가로(38.86 cm)×세로(38.86 cm) = 1,510 m²로 하고 토질에 따라 면적의 크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진화 되었을까요? 고종황제가 1905년에 제정한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인 조선도량형법을 제정 공포하자 일본육군성은 우리나라 침략을 목적으로 육지 측량부대를 동원하여 일본의 경위도(經緯度) 원점에서 우리나라 부산의 영도(影島)와 거제도(巨濟島)의 산 정상에 두개의 인공 삼각점을 옮겨 그 점을 기준으로 한 삼각측량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측량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면적단위가 우리나라의 결부속과법(結負束把法)이 아니라 일본의 지적법(地積法)을 사용하였습니다.

양지척(量地尺) = 곡척(曲尺) = 30.303 cm
 1 평(坪) 또는 보(步) = 방곡척(方曲尺) = 3,305.785 m²
 1 묘(畝) = 30 평(坪)
 1 단(段) = 10 묘(畝)
 1 정(町) = 10 단(段)

결국 가장 과학적인 미터법 체계가 10진법 체계이듯이 이미 3천여년 전에 10진법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전통단위가 인제의 침략으로 일순간에 사라지고 비과학적인 단위체계를 가진 일본의 단위체계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평(坪)은 우리 고유의 단위가 아닌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실시 당시 삼각측량점으로 사용된 옥녀봉〉

| 기술표준 2009. 2